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2. 12 선고 2024가단5304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24. 12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33㎡를 인도하고,
나. 2022. 7. 21.부터 위 가.항의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이균부

별지